

| 관리번호 | 지원대상 | 지원분야 | 지원내용 | 과제구분 | 완료여부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31 | 직원 |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 | 기반시설 설치비(상하수도 설치 등) 국고지원 | 계획수립 | 완료 |

| 세부 지원내용 | | 관련근거 | 일자 | 추진상황 | 비고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반시설 설치비를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여 싼값에 부지 제공 - 상하수도 설치 등을 국고지원 | | 혁신도시특별법 제16조 시행령 제13조 | 06.3.14~ 07.2.12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혁신도시특별법령 제정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혁신도시특별법 공포(07.1.11) -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공포('07. 2.12) * 기반시설 설치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 | |
| 소관부처: 환경부 | | | 07.4.16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후 세부이전상황에 따른 상하수도시설 설치 및 재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검토 - 상하수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한 별도 재원 마련 필요 ○ 별도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 물산업육성방안(국무회의 보고, 환경부, 건교부, 산자부 합동)에 따라 민자유치 추진도 적극 검토 | |
| 담당부서: 수도정책과 / 생활하수과 | | | 07.12.3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'07년도 이전지원방안 후속조치 추진 실적 ○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대한 주관기관인 건교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반시설(상하수도건설)의 국고지원을 포함한 전체 지원내용에 대해 예산처와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 * '07.4.24일 개최된 제29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부대책반 회의결과에 의하면 동 과제는 건교부와 예산처간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국고지원기준, 지원규모, 지원대상의 범위 및 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. | |
| | | | 09.7.16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'09년도 이전지원방안 후속조치 추진 실적 ○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에도 공공기관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건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련법령 등에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는 경우 상하수도 건설을 위한 신규예산 반영은 물론, 산업단지 지원 사례와 같이 국고 100% 지원은 곤란함 * 현재 중소도시 상수도 확충사업은 용자(50%) 지원,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국고 50-70% 지원 ○ 수도 및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승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도정비기본계획 : 3개소 - 하수도정비기본계획 : 6개소 | |
| | | | 12.12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기반시설 설치공사와 연계 준공 추진 | |